광주탄벌 서희스타힐스

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1단지, 2단지

(단위 : 세대)

구 분			1단지						2단지			
			59B	59C	59D	72A	72B	합계	59A	59C	59E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경기도	-	-	-	2	-	2	-	1	-	1
		서울특별시	-	-	-	-	-	-	-	-	-	-
		인천광역시	-	-	-	-	-	-	-	-	-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	1	-	-	-	1	1	-	-	1
	장기복무 제대 군인		1	-	-	-	-	1	-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	-	-	-	-	1	1
	중소기업 근로자		-	1	-	-	-	1	-	-	-	-
	소계		1	2	-	2	-	5	1	1	1	3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청약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 제외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기관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서류
장애인(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등(경기동부보훈지청)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 군인(경기동부보훈지청), 10년 이상 복무 중인 군인(국군복지단), 중소기업 근로자(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분

■ 당첨유형별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상세표기" 및 "전체공개"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전입사항/주소변동 내역/세대원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등)
※ 제출서류는 당첨자격 검수 과정에서 아래 명시된 서류 외에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서류유형		발급기준	해당서류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		당첨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당첨자	주민등록표 등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당첨자	주민등록표 초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당첨자	가족관계증명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당첨자	출입국사실증명원	"출생일~2024년 현재" 내역 / 인터넷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특별공급 기관추천 당첨자는 제외
	○		당첨자 및 직계비속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여부 확인 및 무주택 확인 등 (상세로 발급) ※직계비속의 경우 만18세 이상자에 한함
		○	당첨자 및 세대원	무주택 소명자료	무주택 및 무주택간주(소형저가주택, 농어가주택 등)를 증명하는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주택공시가격증명원,무허가건물확인서등
		○	[분리세대]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분리세대]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에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재혼]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전혼 자녀가 당첨자의 주민등록표상에서 당첨자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상세"로 발급)
		○	당첨자	해외근무 증빙서류	증빙관련 서류 (파견 및 출장 명령서,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당첨자	복무확인서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포함)
	○		당첨자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대리인신청시	○		당첨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 · 비속 포함)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표등 · 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 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